

자료 96-04

정책 토론회

競馬産業 發展을 위한 租稅政策方向

1996. 4.

裴 峻 皓
朴 釘 洙

本 論文에 실린 內容은 筆者의 個人意見을 反映한 것이며 韓國租稅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와는 無關함.

目次

政策討論會 概要 1

第1部：우리나라와 主要國의 競馬産業 比較(裴竣皓) 3

第2部：競馬産業 發展을 위한 租稅政策方向(朴釘洙) ... 41

政策討論會 概要

題 目 : 競馬産業 發展을 위한 租稅政策方向
日 時 : 1996년 4월 18일(목) 10:00~12:15
場 所 :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
主 催 : 韓國租稅研究院
進行順序 : 10:00~10:10 인사말 최 광 원장(한국조세연구원)
10:10~10:25 주제발표 I
10:25~10:40 주제발표 II
10:40~12:00 토 론
12:00~12:15 종합정리

司 會 者 : 차병권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發 表 者 : 제1주제 : 배준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경마산업 비교”

제2주제 :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討 論 者 : 권강웅 (내무부 세제과장)

김달중 (농림수산부 축산정책과장)

김덕락 (한국마사회 이사)

김문영 (문화일보 기자)

김용민 (재정경제원 소득세제과장)

김태근 (문화체육부 체육기획과장)

이수범 (인하대 교수)

이진순 (숭실대 교수)

장현준 (중앙일보 논설위원)

(가나다 順)

第 1 部

우리나라와 主要國의 競馬産業 比較

裴俊皓

(韓國租稅研究院)

目次

I. 序論	6
II. 競馬體系	9
III. 馬券賣出額의 配分	14
1. 控除率 수준과 控除內譯	14
2. 租稅體系	15
가. 馬券稅 등 競馬關聯 稅目	15
나. 國稅와 地方稅 配分	17
다. 還給金과 其他所得稅	19
라. 個人馬主와 所得稅制	20
3. 馬事會 收得金 등의 配分	22
IV. 競走馬 生産	27
V. 기타 賭博과의 關係	29
VI. 要約	34
附錄 : 競馬산업의 經濟적 效果(캐나다 온타리오州)	36
參 考 文 獻	39

I. 序論

199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競馬産業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여 1995년 말 현재 마권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제7위의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같은 급성장은 1993년의 個人馬主制 발족에 따른 경마의 現代化가 기폭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장산업이 된 만큼 경마산업의 종사인력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 직접인력만도 한국마사회 임직원, 馬主, 調教師, 騎手, 마필관리사, 마필 생산농가의 구성원 등 5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을 지원해주는 지원산업의 간접인력까지 포함하면 종사인력은 1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직접인력이 생산해내는 경마서비스는 1995년에 2천 6백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¹⁾ 연간 6백만명을 웃도는 경마고객들에 의해 소비되고 있다. 결국 빠른 성장이 稅收의 增加는 물론 競馬關聯 施設의 확충과 農畜産분야의 확대 등 산업일반을 확대시켜 관련 분야의 고용 창출 등 플러스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量的인 成長에도 불구하고 우리 競馬는 競馬産業으로서 脆弱한 면을 아직도 많이 지니고 있다. 취약점 중 外國과 비교해 두드러지는 점을 두 가지만 들어 보면 더러브렛 경주를 실시하는 競馬場이 果川 한 곳뿐으로 競馬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과 所要 競走馬의 80% 이상을 매년 輸入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果川競馬場 一極體制에 따른 문제점은 場外競馬場을 증설하여 가까운 都市 內部에서 손쉽게 베팅할 수 있도록 하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만 地方自治團體間 收益配分을 둘러싼 문제가 남는다. 그리고 높은 輸入馬 의존비율에 따른 문제점은 國産馬 생산을 늘려나가면 해결될 수 있지만 輸入馬와 國産馬

1) 이 금액은 마권매출액의 12% 수준으로 마사회 소득금의 비율에 해당된다.

의 밸런스를 어느 수준으로 維持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脆弱點은 접근방법에 따라선 뜻밖에도 간단히 처리될 수 있다. 가령 地方自治團體間의 타협과 조정을 거쳐 場外競馬場을 신설해 갈 수 있다면 전국적인 競馬場 체인망의 구성이 경마발전의 先決要件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質이 낮은 國產馬 生産을 고집해 輸入馬의 비율을 크게 낮추기보다는 국내경주에서 우수 성적을 거둔 輸入馬의 後孫을 留學 등의 방법을 이용해 生産, 育成할 수 있다면 國產馬를 生産하려는 目的의 相當 部分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두가지 문제 외에도 장기적으로 경마가 産業으로 정착되고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선 마권매출액의 配分을 적절히 調整해가는 작업이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문제를 도외시할 경우 현재와 같이 파이가 급격히 증가해가는 상황하에선 드러나지 않던 문제가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低成長期와 安定期에 큰 문제로 부각되어 경마산업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계층에서 행해지는 도박성 베팅은 가정파탄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없지 않으므로 경마를 건전한 국민적 레저스포츠로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머지않아 慶州競馬場이 선보이고 뒤이어 釜山과 光州에 競馬場이 신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韓國 競馬가 매출액에 걸맞게 成熟해 가려고 하는 현 시점에서 競馬關聯 諸般 制度和 租稅體系의 정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時宜適切하다고 생각된다.

本稿의 목적은 경마관련 사항의 國際比較를 통해 우리 경마가 지닌 問題의 所在를 밝히고 示唆點을 정리하는 것이다²⁾. 이하에선 제Ⅱ장에서 競馬體系,

2) 1995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마매출액은 2조 2천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마권매출액의 전체가 아닌 12%만을 경마서비스 소비가액으로 보는 것은 마권구입이 소비와 투자가 복합된 행위이고 소비가 산출액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곧 경마서비스 소비는 경마서비스 산출액의 최대치라고 할 수 있는 마사회수득금을 초과할

제Ⅲ장에서 마권매출액의 배분과 관련해 공제율 수준과 공제내역, 조세체계, 마사회수득금의 배분을 살펴보고 제Ⅳ장에서 경주마 생산, 제Ⅴ장에서 기타갬블링과의 관계, 제Ⅵ장에서는 주요 사항을 요약, 정리한다. 부록에서는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예로들어 경마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수 없다. 나머지 88%는 税金과 투자에 따른 還給分이다.

II. 競馬體系

〈表 1〉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2개 주요국의 경마현황이 정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시행자가 한국마사회 하나뿐이며 이 점에서 일본, 홍콩과 동일하며 시행자가 복수이며 또 이들이 경마장의 수만큼이나 많은 대부분의 서양국가들과 크게 다르다. 시행자인 한국마사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시행업무 일체와 경마장을 직접 운영하며 동시에 경마를 총괄하고 있어 일본의 일본중앙경마회(JRA), 홍콩의 Jockey Club과 유사한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서양국가들에선 시행자 및 경마장이 경마 총괄조직과 구별되어 경마장 및 시행자는 영리법인, 총괄조직은 비영리법인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마의 형태에 있어선 우리 나라의 경우 홍콩, 브라질과 같이 평지(flat)경주 한 종류만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馬車(trot)競走와 障礙競走도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馬車競走는 없지만 障礙物競走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競走馬의 절대량을 輸入에 의존하고 있어 자급률은 15% 이하의 수준이다. 따라서 더러브렛 1두당의 출주수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경우 10.2회를 기록하여 이탈리아 8.7, 캐나다 8.3, 미국 7.8, 호주 6.5, 독일 6.2, 브라질 6.1, 홍콩 6.1, 프랑스 6.0, 일본 5.8, 뉴질랜드 5.4, 영국 4.5, 아일랜드 4.4보다 월등히 높고 12개국 평균인 6.3회보다 60% 이상 많다.

우리의 경우 경주횟수가 적은 반면 마권매출액은 커서 1회 경주당 마권매출액이 16억원으로 홍콩 138억원, 일본 82억원에 이어 세계 제3위의 수준이다. 다음으로 미국 1.0억원, 영국 7.9억원, 프랑스 3.2억원, 브라질 1.9억원, 호주 1.6억원, 이탈리아 1.1억원, 뉴질랜드 0.7억원, 아일랜드 0.6억원, 독일 0.3억

원의 순이다.

또 1 경주당 賞金額도 2,900만원으로 일본 1억 4,600만원, 홍콩 5,400만원에 이어 세계 제3위이며 브라질 2,800만원, 프랑스 1580만원, 미국 1,200만원, 이탈리아 940만원, 영국 900만원, 아일랜드 850만원, 독일 470만원, 뉴질랜드 380만원, 호주 370만원의 순이다.

그리고 賞金の 마권매출액 對比 比率은 1.8%로 홍콩 0.4%, 영국 1.1%에 이어 세번째로 낮으며 일본 1.8%³⁾, 호주 2.3%, 프랑스 5.0%, 뉴질랜드 5.2%, 미국 6.4%, 캐나다 9.9%, 아일랜드 13.6%, 독일 13.9%, 브라질 14.9%의 순으로 높아진다.

競走賞金の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주최자가 지불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많은 국가에선 馬主나 개인스폰서 등이 賞金を 지불하고 있고 국가기관이나 공사 등이 일부를 부담하는 국가도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국가 지불분이 압도적으로 큰 것은 UNIRE라는 경마총괄조직이 정부조직이기 때문이고 영국의 경우도 총괄조직인 British Horseracing Board가 공적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3) 일본의 경우 표면적인 교부상금의 비율은 1.8%로 낮지만 상당액의 경주마 사고위로금(이는 JRA가 마주상호회조성금이라는 명목으로 마주상호회에 지원)이 마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이를 포함하면 상금비율은 2.6%까지 올라간다. 이 밖에 JRA는 경주협력금과 마주협회상이라는 이름으로 일본마주협회연합회를 지원하고 있는바 이것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상금수준은 더욱 높아진다.

<表 1> 主要國의 競馬 現況 (1993年)

(單位 : 個, 億圓, %, 頭, 回)

項目	國名	미 국	영 국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1. 시 행 자		178	59	260	75	34	2
2. 경 마 장 수		171	59	266	75	35	27
3. 투표권매출액		132,895.2	56,693.6	52,492.6	4,418.6	17,811.2	1,058
패 리 류 추 일		132,895.2	913.8	52,492.6	3,309.6	4,373.1	218.6
장 내		92,205.3	802.3	3,565.5	2,898.8	1,680.5	218.6
장 외		40,689.2	111.6	48,927.1	410.8	2,692.6	0
북 메 이 커			55,779.8		1,109.1	13,438.1	839.4
장 내			0		1,109.1	1,941.7	839.4
장 외			55,779.8		-	11,496.4	
			P B		P B	P B	
4. 공 제 율 (%)		20.00%	21.00%/22.00%	26.64%	24.40%/16.67%	30.95%/33.35%	19.36%
국 고		5,591.0	0/4,322.9	7,997.5	22.1/184.8	208.2/2,240.7	-
		(4.2)	(7.6)	(15.2)	(4.7)	(13.7)	(0)
운 영 비		10,613.2	146.2/7,390.8	3,117.4	291.2/0	1,145.2/639.9	29.6
경 주 비		0	45.7/557.8	3,395.0	494.2/0	0/1,600.8	12.7
		10,383.3(기타)					
5. 교 부 상 금							
평 지		5,968.1	428.5	801.2	215.9	444.0	75.9
장 애 물		32.1	206.4	349.0	15.2	66.2	68.6
마 차		2,185.0	-	1,192.9	306.5	740.6	-
계		8,185.1	634.9	2,343.1	537.5	1,250.8	144.5
6. 생 산 자 상							
평 지		252.3	7.1	95.9	43.0	85.5	0
장 애 물		0		53.8	2.7	3.5	0
마 차		20.9		131.6	30.6	158.4	0
계		273.2		281.3	76.4	247.4	0
7. 기 타 조 성 금							
평 지				32.1	10.8	0.5	1.7
장 애 물				18.3	0.8	-	0
마 차				16.1	-	0.7	-
계				66.5	11.6	1.2	1.7
8. 상 금 지 출 자							
주 최 자			87.5	2,590.7	87.9	3.1	35.5
국가 또는 공사			322.4	-	370.7	1,466.6	23.6
개 인			107.0	2.1	89.6	0	32.0
마 주			118.0	92.6	0	28.5	51.4
기 타			-	5.6	77.2	0	2.1
9. 생 종 모 마	TB TR	TB TR	TB TR	TB TR	TB TR	TB TR	TB TR
번 식 빈 마	5,666(1,286)	682 (0)	471 (854)	135 (321)	222 (430)	411 (-)	
새 끼 말 수	57,351(18,462)	10,435 (-)	8,362(21,559)	2,100 (3,583)	2,763 (8,100)	12,500(-)	
	34,170(11,724)	5,319 (0)	3,881(13,201)	1,501 (2,480)	1,893 (5,550)	6,915 (-)	
10. 경 주 회 수							
평 지		65,112	3,804	4,340	2,676	4,344	662
장 애 물		256	3,358	2,164	208	392	1,034
마 차		69,920	0	10,068	10,098	11,225	0
11. 出 走 實 頭 數							
평 지		72,567	15,409	12,037	4,485	4,522	4,850
장 애 물							
마 차		46,614	-	14,271	7,947	8,023	-
12. 出 走 延 頭 數							
평 지		561,217	38,849	49,187	27,805	36,667	7,404
장 애 물		1,194	30,705	23,492	0	2,809	13,779
마 차		745,374	0	142,933	92,320	108,935	-

<表 1>의 계속

(單位 : 個, 億원, %, 頭, 回)

項目	國名		호 주		뉴질랜드		일 본		홍 콩		브라질		한 국	
1. 시 행 자	55		474		92		1		1		4		1	
2. 경 마 장 수	54		404		57		10		2		4		2	
3. 투표권매출액	10,892.7		62,287.5		4,024.1		280,906.2		72,028.5		5,656		17,729	
패 리 류 추 열	10,892.7		51,137.8		4,024.1		280,906.2		72,028.5		5,656		17,729	
장 내	9,564.7		6,027.0		548.2		40,647.0		13,667.2		2,828		7,497	
장 외	1,328.0		45,110.9		3,475.9		240,259.2		58,361.3		2,828		10,232	
북 메 이 커			11,149.8											
장 내			11,149.8											
장 외														
4. 공 제 울 (%)	30.96		P 16.01/15.04 B		20.8		25.7		18.66		30.00		28.00	
국 고	785.0		4,605.5/113.7		321.9		34,815.2		9,198.0		84.84		2,837	
	(7.2)		(7.6)		(8.0)		(12.4)		(12.77)		(1.5)		(16.0)	
운 영 비	1,505.6		2,047/1,445.0		434.6		27,675.2		4,242.5		770.91			
주 비	1,081.9		1,535.1/113.7		80.5		9,954.7		086		841.05			
5. 교 부 상 금	432.8		1,134.5		123.8		4,462.7		279.0		841.05		317	
평 장 애 물 차	-		19.8		8.7		221.2		-		-		-	
마 계 차	649.1		281.6		76.2		-		-		-		-	
계	1,081.9		1,435.8		208.6		4,683.9		279.0		841.05		317	
6. 생 산 자 상 평 장 애 물 차							329.0						6.47	
계							-						-	
계							329.0						6.47	
7. 기 타 조 성 평 장 애 물 차							292.2							
계							292.2							
계							292.2							
8. 상 금 지 출 자 주 취 자	1,023.6				45.3		4,627.5		271.8				323	
국가 또는 공사	50.6				57.3		-		-					
개 인	6.3				17.0		-		6.5					
마 주	1.4				12.9		56.4		0.7					
기 타	-				-		-		-					
9. 생 종 모 번 식 새	TB 443 TR (361)		TB 2,006 TR (607)		TB 363 TR (214)		TB 585 TR (-)				TB 200		TB 14	
번 식 새	5,624(8,321)		31,329(11,797)		10,728(5,933)		14,181(-)				2,300		216	
회 수	2,880(3,944)		17,669 (8,369)		5,163(4,100)		10,188(-)				1,500		108	
10. 경 주 평 장 애 물 차	17,483		23,582		2,991		3,285		521		3,022		1,106	
마 계 차	31,985		258		226		140		-		-		-	
계			15,248		2,237		-		-		-		-	
11. 出 走 實 頭 數 平 均	9,399		35,497		6,971		7,000		959		5,563		1,150	
장 애 물 차	23,641		14,858		3,620		-		-		-		-	
12. 出 走 延 頭 數 平 均	78,001		229,754		35,409		39,602		5,809		33,694		11,719	
장 애 물 차	-		2,405		2,239		1,174		-		-		-	
계	214,316		145,974		27,325		-		-		-		-	

註 : P : Pari-Matuel, B : Book-Maker

資料 : 日本中央競馬會, 『中央競馬便覽』, 1995, pp.150~155, 韓國馬事會 및 홍콩JC 내부자료

<表 2> 國家別 馬券賣出額 및 還給率(1994)

(單位 : 10억원)

	패리뮤츄얼	북메이커	합 계	국민 1인당 연평균 매출액(천원) ¹⁾	환급률(%) ²⁾
1. 日本	36,491		36,491	292 (3)	74.23(10)
2. 美國	10,038		10,038	40 (9)	79.00 (4)
3. 홍콩	7,491		7,491	1,249 (1)	81.34 (2)
4. 濠洲	5,840	1,183	7,023	401 (2)	83.99 (1)
5. 英國	341	5,519	5,860	101 (5)	77.84 (6)
6. 프랑스	5,470		5,470	96 (7)	72.65(12)
7. 이탈리아	624	1,425	2,049	35(12)	68.62(18)
8. 韓國	1,802		1,802	39(10)	70.53(14)
9. 캐나다	1,004		1,004	37(11)	73.97(11)
10. 南阿共和國	625	283	908	23(14)	76.87 (8)
11. 스웨덴	864		864	99 (6)	70.65(13)
12. 말레이시아	661		661	33(13)	76.98 (7)
13. 뉴질랜드	489		489	140 (4)	78.00 (5)
14. 獨逸	354	118	472	6(19)	75.60 (9)
15. 아르헨티나	416		416	12(16)	69.00(17)
16. 터어키	369		369	7(18)	53.00(20)
17. 노르웨이	175		175	40 (8)	64.50(19)
18. 그리스	172		172	16(15)	80.00 (3)
19. 브라질	163		163	1(20)	70.00(16)
20. 칠레	157		157	11(17)	70.00(15)
			82,075	95	

註: 1) ()내는 순위

2) 패리뮤츄얼의 경우이며 ()내는 순위

資料: ECUS, *Annuaire 1995*, Tableau Economique Statistique et Graphique du Cheval en France, Donnees 1994, UNIC(Union Nationale Interprofessionnelle du Cheval), 1995. p.8.

Ⅲ. 馬券賣出額의 配分

1. 控除率 수준과 控除內譯

勝馬投票券 賣出額은 일정액의 控除分과 베팅한 競馬顧客들에 대한 還給分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는 控除率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 우리의 현행 控除率은 1996년 기준 30%이며 이는 税金 19%, 韓國馬事會 收得金 11%로 구성된다.

주요국의 控除率 現況과 馬券賣出額, 1인당 馬券賣出額 등이 <表 1>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美國, 프랑스, 獨逸, 이탈리아, 日本의 馬券稅 및 類似稅目에 대해 간략히 정리함으로써 控除率의 税金部分을 살펴본다.

1994년 현재 馬券賣出額 기준 上位 20개국의 還給率이 <表 2>에 정리되어 있다. 上位 15개국 중 우리나라 보다 낮은 還給率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밖에 없다. 우리의 還給率이 낮다는 것은 控除率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控除率이 높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때 무엇 때문에 우리의 控除率이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税金이 19% 수준이라고 했다. 우리의 控除率 水準은 <表 1>에서 보듯이 12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장 높은 프랑스가 15.2%, 이탈리아가 13.7%(1994년이후 크게 낮아졌음), 홍콩이 12.77%, 일본이 12.4%로 10% 이상을 기록하는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다. 국민 1인당 馬券購入額이 높아 競馬가 활발하다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인 홍콩, 濠洲, 日本은 12.77%, 7.6%, 12.4%를 기록하고 그 다음으로 활발한 그룹인 뉴질랜드, 英國은 8.0%와 7.6%를 보이고 있다.

2. 租稅體系

가. 馬券稅 등 競馬關聯 稅目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국의 경마관련 세목이 <表 3>에 정리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 馬券稅, 教育稅, 農特稅, 其他所得稅의 4종이 있으며 합계 세율은 마권매출액의 18%(1996년 기준)수준으로 세계최고 수준이다.

<表 3> 競馬關聯 稅目

國 家	國稅	地方稅(州稅포함)	稅率合計(%)
1. 미 국	① 연방 소득세	② 州Pari-Mutuel Tax	2~4
2. 영 국	① GBD ② Betting Levy ③ Tote Contribution		8.4
3. 프 랑 스	① 초과누진소득세 ② 인지세 ③ 부가가치세		12.9
4. 독 일		① 경마복권세(州)	0.67
5. 이탈리아	① 공연세		5
6. 아일랜드	① 마권세		10
7. 캐 나 다	① 연방 Pari-Mutuel Tax	② 州Pari-Mutuel Tax	8.2
8. 호 주		① 주정부 공제 ② Turnover Tax (州)	6.75~10
9. 뉴질랜드	① Totalizator Duty ② GST		7.9
10. 일 본	① 제1국고납부금 ② 제2국고납부금	③ 지방경마수입	12~13
11. 홍콩	① 마권세		12.77
12. 브라질	① 소득세	② 오락입장세(市)	1.5
13. 한 국	① 교육세 ② 농특세 ③ 기타소득세	④ 마권세(道)	18

미국은 州稅인 Pari-Mutuel tax와 聯邦稅인 所得稅⁴⁾의 두 종류로서 2-4%가 부과되는 Pari-Mutuel tax는 면허세(license fees) 성격을 지니고 있고 高倍率馬券에 적용되는 연방소득세는 우리와 유사하다.

영국은 General Betting Duties(GBD), Betting Levy, Tote Contribution의 세 종류가 있는데 GBD는 마권매출액의 6.7%(1995년), Betting Levy 등이 1.7%로 장외발매액의 8.4%가 원천징수된다. 이率は 1994년에 비해 낮아졌는데 이유는 복권과의 경쟁 때문이다. 1994년의 GBD는 7.75%로 공제액 중 조세비중이 복권에 비해 높아⁵⁾ 마권매출액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여 6.7%로 하향조정되었다.

프랑스는 印紙稅, 附加價値稅, 超過累進所得稅의 세가지가 있으며 1996년도 예산기준으로 초과누진소득세 6.4%, 인지세 3.8%, 부가가치세 2.7%로 전체 마권매출액의 12.9%이다. 마사회 소득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점과 환급금에 가장 많은 段階의 누진소득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는 점이 여타 국가와 다른 점이다.

독일은 州稅인 경마복권세 한 종류뿐으로 명목세율이 16.67%로 높지만 Pari-Mutuel 사업자에게 최고 16%를 되돌려주므로 실질 세부담은 0.67%에 불과하다. 그러나 Book-Maker에게서 징수하는 세수는 되돌려주지 않으므로 일정량의 지방정부 세수가 확보된다.

이탈리아는 國稅인 公演稅(Spectacle tax) 한 종류뿐이며 세율은 5%이다.

아일랜드는 장외매출의 경우에 한해 마권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10%이다.

4)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3402조 q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동조항은 1976년에 제정되었다. 제정 초기에는 1,000달러 이상이면서 300배 이상의 환급금에 대해 20% 세율로 원천징수가 행해졌으나 1992년에 개정되어 5,000달러 이상이면서 300배 이상인 경우에 28% 세율로 원천징수가 행해지고 있다.

5) 1994년의 7.75%의 GBD하에선 전체 공제액 중 조세의 비중이 34%로 나타나 복권의 24%보다 높았다.

Tote와 장내 Book-Maker에게는 마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캐나다는 연방 Pari-Mutuel稅와 州 Pari-Mutuel稅의 두가지가 있는데 연방세 0.8%, 州稅 7.4%의 합계 8.2%이다.

호주는 州稅인 Turnover tax 하나로 세율은 1%이다.

뉴질랜드는 Totalizator duty와 GST의 두 종류로 前者는 마권매출액의 5.5%이고 後者는 총공제액(Totalizator duty+마사회 소득금)의 12.5%이다.

일본은 國稅인 제1 국고납부금과 법인세에 해당되는 제2 국고납부금의 두 종류뿐이다. 세율은 제1 국고납부금이 10%, 제2 국고납부금이 2%~3%이다. 이상은 중앙경마에 적용되는 세율이고 지방경마는 마권발매에 따른 수익의 일정비율이 지방정부의 稅入으로 귀속된다.

홍콩은 마권세 한 종류로 세율은 보통베탱이 11.5%, 고배율 베탱이 17.5%이다.

브라질은 市稅인 오락입장세와 國稅인 소득세의 두 종류로 오락입장세는 입장료의 10%이고 소득세는 Concourse라는 고배율 마권의 환급금에 30%의 세율로 부과된다.

나. 國稅와 地方稅 配分

租稅는 地方稅인 馬券稅가 10%이고 國稅인 教育稅가 5%, 農特稅가 2%, 其他所得稅 1%로 구성되어 있다. 其他所得稅는 教育稅, 農特稅와 같은 法定稅率이 아니고 事後的으로 얻어진 稅收가 馬券賣出額 대비 1% 수준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國稅와 지방세의 배분은 10 對 8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馬券(勝者投票券 또는 勝馬投票券) 發賣金額의 10%를 地方稅(道稅)인 競走·馬券稅가 課稅되고 있으며 위 競走·馬券稅額의 20%가 教育稅로 課稅(surtax)되며 1996년 7월부터는 그 稅率이 50%로 인상된다. 뿐만 아니라 競

走·馬券稅額의 20%를 農漁村特別稅로 2004년 6월 30일까지 課稅하고 있다. 여기에 配當率이 100배가 넘는 경우, 其他所得稅가 추가적으로 課稅되어 配當金의 20%를 납부하게 되어 있고 또 住民稅가 10% 부가된다⁶⁾. 결국 1996년 7월부터는 馬券 한단위(100원)당 10원의 地方稅와 8원 상당의 國稅가 賦課된다. <表 4>에는 현행 '競馬關聯稅制'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表 4> 現行 競馬關聯稅制

稅目	區分	競馬關聯 租稅	納稅義務者	關聯法規
馬券稅	地方稅 普通稅	勝馬投票券 發賣額의 100분의 10	韓國馬事會	地方稅法 234條의 8
特別消費稅	國稅 普通稅	競馬場 入場料의 100분의 50	"	特別消費稅法 1條
其他所得稅	國稅 普通稅	勝馬投票券 購買者가 받는 還給金의 100분의 20	"	所得稅法 21, 84, 129條
教育稅	國稅 目的稅	馬券稅의 100분의 50 特消稅의 100분의 30	"	教育稅法 3條
農特稅	國稅 目的稅	馬券稅의 100분의 20	"	農特稅法 3條

美國, 英國, 프랑스, 獨逸, 이탈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일본, 홍콩, 브라질, 한국을 대상으로 경마관련 세목을 국세와 지방세(주세 포함)로 분류하면 <表 3>과 같다. 국세와 지방세로 共有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일본, 브라질, 한국의 5개국이고 지방세뿐인 국가는 독일과 호주, 나머지는 모

6) 정부는 1995년 세제개편을 통해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마련의 방편으로 교육세의 부과대상과 세율을 늘리고, 중앙정부의 부담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교육비 부담을 증대시키기로 하였는바, 이의 재원마련을 위해 주민세의 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하였다.

두 국세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경매 수입의 일부가 지방정부의 財源에 포함되고 있으나 현재는 지방경매의 부진으로 稅入이 거의 없고 브라질의 경우 지방세인 오락입장세의 稅入이 아주 미미한 수준에 있어 地方稅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稅目은 우리 나라의 馬券稅 외에 미국과 캐나다의 州 Pari-Mutuel Tax, 호주의 州政府 控除 정도이다.

다. 還給金과 其他所得稅

환급금에 所得稅를 부과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少數派인데 우리나라와 미국, 브라질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表 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고배율마권에 과세하고 있고 브라질도 稅收가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미국과 브라질의 마권세 稅率은 우리에게 비해 월등히 낮다.

<表 5> 還給金 所得課稅와 馬券種類別 差等 還給率

	還給金 所得課稅		馬券種類別 差等還給率
1. 미 국	有	\$5,000 이상이고 300배 이상시 28%	有
2. 영 국	無		無
3. 프 랑 스	無		有
4. 독 일	無		有
5. 이탈리아	無		有
6. 아일랜드	無		無
7. 캐 나 다	無		有
8. 호 주	無		有
9. 뉴질랜드	無		有
10. 일 본	無		有
11. 홍 콩	無		有
12. 브라질	有	Concourse 고배율환급율 30%	n.a.
13. 한 국	有	100배 이상 20%	有

라. 個人馬主와 所得稅制

우리나라의 個人馬主는 자신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에 경마와 관련하여 賞金所得을 얻거나 말의 양도 등에 의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상당수의 국가에선 취미로 하는 馬主들의 賞金所得 등에 대해 비과세해 주고 있다(<表 6> 참조). 비과세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이고 과세하는 국가는 미국, 이탈리아, 아일랜드, 캐나다, 일본, 브라질, 한국 등이다.

말 한 두필을 지닌 취미馬主의 경우 비과세되지만 사업목적으로 소유하는 馬主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일본의 경우 馬主가 신청하면 사업소득자 혹은 잡소득 발생자로 처리해 주는데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면 손익통산, 폭넓은 양도소득 공제, 순손실의 이월 공제와 순손실의 소급적용에 의한 세액환급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상금관련 소득이 원천징수되므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선 赤字馬主라도 신고해야 할 경우가 있다.

<表 6> 馬主와 馬匹生産者에 대한 所得課稅

國 家	馬主(賞金所得, 讓渡所得)		生産者(賞金所得, 讓渡所得 등)
1. 미 국	과 세		과세
2. 영 국	비과세		과세
3. 프 랑 스	과세 & 비과세	단, 양도소득은 취미시 면세, 사업목적시 과세	과세
4. 독 일	비과세	단, 사업목적일 경우는 과세	과세(사업목적시)
5. 이탈리아	과 세		과세
6. 아일랜드	과 세		과세 (VAT저울과세有)
7. 캐 나 다	과 세		과세
8. 호 주	과세 & 비과세	취미시(99%) 비과세, 사업목적시 과세	과세
9. 뉴질랜드	비과세		과세
10. 일 본	과 세	상금소득의 원천징수 有 사업소득과 잡소득으로 2分되어 있음.	과세
11. 홍콩	비과세		-
12. 브라질	과 세		n.a.
13. 한 국	과 세		과세

3. 馬事會 收得金 등의 配分

마권매출액에서 환급금과 세금을 제외한 마사회 수익금의 배분을 살펴보자. <表 7>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이탈리아와 더불어 사회기여부문에 수익금의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馬主賞金の 비중은 우리의 경우가 가장 낮다.

<表 8> 에 제시되어 있는 착순별 馬主賞金 배분체계는 우리의 1착 상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고 2착과 3착의 상금 비중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 馬主상금의 직종간 배분을 나타낸 <表 9>에선 우리의 경우 馬主배분몫이 낮고 조교사, 기수의 몫이 다소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같은 배분몫의 차이를 해석함에 있어 우리 경마와 외국 경마의 질적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지만 객관적인 수치만을 비교하면 우리의 경우 1착 馬主의 몫이 주요국의 그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입장료의 有無와 課稅與否를 정리한 것이 <表 10>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입장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기에 비과세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과세국의 경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오락입장세 등이 부과되고 우리처럼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동시에 부과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表 7> 競馬施行機關 收得金 등의 配分

(單位 : 억원, %)

	馬主賞金	生産者賞金	施行體收入	事業費· 管理費	事業外費用	社會寄與
1. 미국(94)	1,072 (29.9)	101 (2.8)	1,121 (31.2)	1,295 (36.1)		
2. 영국			n.a.			
3. 프랑스			n.a.			
4. 독일			n.a.			
5. 이탈리아(94)	1,599 (72.2)	165 (7.4)		368 (16.6)		85 (3.8)
6. 아일랜드			n.a.			
7. 캐나다(94)	490 (50.0)		490 (50.0)	163		
8. 호주(95)	127 (43.8)			(56.2)		
9. 뉴질랜드			n.a.			
10. 일본	5,887 (17.7)	309 (0.93)		27,136 (81.4)		
11. 홍콩						
12. 브라질			n.a.			
13. 한국(94)	317 (13.7)	7 (0.3)	323 (14.0)	1,140 (49.2)	218 (9.4)	314 (13.5)

註 : 1. 각국의 수득금배분은 해외출장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참고자료는 『경마산업발전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3.을 참조.

2. ()안은 비율임.

資料 : 『馬事年鑑』, 한국마사회, 1994.

<表 8> 着順別 馬主賞金 配分體系

(單位 : %)

	1 위	2 위	3 위	4 위	5위 이하
1. 미 국	60	20	10	10	10
2. 영 국	45~60		n.a.		
3. 프 랑 스	54	22	13	7	4
4. 독 일			n.a.		
5. 이탈리아			n.a.		
6. 아일랜드	100	0	0	0	0
7. 캐 나 다	60	20	11	6	3
8. 호 주	68	18	8	4	2
9. 뉴질랜드	65	20	10	5	
10. 일 본	53	21	13	8	5
11. 홍콩			n.a.		
12. 브라질			n.a.		
13. 한 국	50	22	13	9	6

<表 9> 馬主賞金の 職種間 配分

(單位 : %)

국 가	마 주	조 교 사	기 수	마필관리사, 조교조수 등	기 타
1. 미 국	80	10(+ \$75~\$100/日)	10		
2. 영 국	80	8	7	5	
3. 프 랑 스	77.5	14	8.5		
4. 독 일	81	10	5	2	2(마주협회1, 경마위원회1)
5. 이탈리아	85	10	5		
6. 아일랜드	80.4	7.5	10	2.1	
7. 캐 나 다	80	10	10		
8. 호 주	85	10(+ \$60/日)	5		
9. 뉴질랜드	85	10	5		
10. 일 본	80	10	5	5	
11. 홍콩		n.a.			
12. 브라질	74	12	10	4	
13. 한 국	67	14	12	7	

<表 10> 入場料의 有無와 課稅與否

	입장료 유무	과세 여부
1. 미 국	有(일부,5센트, 뉴저저주)	無
2. 영 국	有	無
3. 프 랑 스	有(장외발매)	有(VAT)
4. 독 일	有	有(VAT)
5. 이탈리아	有	有(VAT)
6. 아일랜드	n.a.	
7. 캐 나 다	有	有(GST, PST)
8. 호 주	有	無
9. 뉴질랜드	有(일부)	無
10. 일 본	有	有(VAT)
11. 홍콩	n.a.	
12. 브라질	有(거의 無)	有(오락입장세)
13. 한 국	有	有(VAT,특별소비세)

IV. 競走馬 生産

우리는 지금 장기계획을 세워 국내산마의 생산을 확대해 가고 있다. 당초 계획한 만큼 질적, 양적으로 供給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良質의 국내산마를 생산하려는 의욕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表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내산마 생산실적은 1994년에 연간 108두였으며 이 가운데 매입되어 훈련중이거나 경주중인 말은 80여두 정도이다. 따라서 매년 신규공급마의 80% 정도인 600여두를 수입해 오고 있다. 수입선은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가 주축을 이루며 구입마의 質的 水準은 해당 수출국 보유마 중 最下位級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低級馬라도 국내산마보다 우수하여 경주시엔 핸들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산마의 질이 그만큼 뒤떨어져 있다는 反證이다. 따라서 國內産馬의 供給増大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적은 수입지라도 良質의 國內産馬의 공급을 늘려가는 것이다.

<表 11>에 국가별 경주마 생산비가 비교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프랑스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하지만 독일, 캐나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과 캐나다의 경우 경매시장에 나오는 Yearling의 평균가격을 기준한 것으로 종부비를 제외한 우리의 생산비 수준과 맞먹는 가격이다. 현재는 가격면에서 국내 생산이 採算이 맞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국내 생산코스트가 상승하면 質을 고려한 가격면에서 국내산마의 高評價가 더욱 심해질 우려가 높다.

<表 11> 國家別 競走馬 生産費

(單位 : 만원)

	한국 ¹⁾	일본 ²⁾	프랑스 ³⁾	독일	캐나다 ⁴⁾
생산비 계	1,164	4,408	2,000	625	623
종부비	500	1,819	844		
사료비	172	223	900		
진료비	13	85			
인건비	211	1,079			
감가상각비	167	868	256		
기타	102	335			

註 : 1) 생산비 계산은 「국내산마 생산에 대한 지원방안」(한국마사회 내부자료, 1996)에 의한 것이며 종부비는 1회 종부비에 평균종부횟수를 곱하였음. 기준연도는 1995년임.

2) JRA 내부자료에 의존하였으며 1994년 기준임.

3) 생산비는 1995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감가상각비는 8만프랑(12803만원)의 1/5을 적용하였고 사료비는 (새끼말 1년 사육비용 400*1.5년 + 종빈마 사육비용(새끼말 비용의 1/2))에 의해 계산.

4) 캐나다의 생산비는 The Canadian Thoroughbred Horse Society (CTHS)의 내부자료에 의해 계산. 기준연도는 1994년임.

V. 기타 갬블링과의 관계

<表 12>은 競馬와 기타 갬블링의 屬性을 比較, 정리한 것이다. 表에서 알 수 있듯이 社會가 發展함에 따라 競馬의 본질적인 屬性이 여러 측면에서 弱化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競馬가 賭博産業의 獨占的 地位를 누리던 시대에는 현재의 他갬블링과 같이 강한 競爭力에 입각해 발전해 왔으나 지금은 競爭力이 있고 多種多樣한 新種 갬블링과 경쟁하여 살아남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경우 아직 다양한 갬블링이 선을 보이지 않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 호주 등과 같이 多樣多樣한 갬블링이 동시다발적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전망이다. 우리의 경마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끊임없이 매력을 지닌 레저스포츠로서 살아남기 위해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表 12> 競馬와 기타 gambling의 比較

	경 마	복 권	慈善게임 ¹⁾	카 지 노
强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의 환금률 · 베팅과 결과 간 시간차 · 제한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으름 · 다양한 품목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행동 · 연속 동작 · 매력적인 장치 · 다양한 품목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행동 · 연속 동작 · 매력적인 장치 · 다양한 품목 선택
수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인 汚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으로 수용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으로 수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으로 수용가능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소빈곤, · 더러브렛은 수준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도박으로 인식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도박으로 인식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박 및 오락 · 참신성
규모와 수요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협소 · 더러브렛에 대한 執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 상표 집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도박인 · 오락 추구자
難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 · 知的 挑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습득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득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롯머신-습득 용이 · 카드테이블-습득 복잡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으로 불편 · 제한적이지만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된 네트워크 · 간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적이지만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적이지만 크게 성장
투입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 에너지 · 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불필요 · 에너지불필요 · 실질비용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 에너지 · 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 에너지 · 돈

註: 1) 慈善게임이란 Bingo, Break Open Tickets, Charity Casino, Raffles 등이다.
 資料: Deloitte Touche Tohmatsu International, *Strategic Plan for the Ontario Horse Racing Industry*, July, 1995.

<表 13>은 주요국의 각종 갬블링의 매출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홍콩, 아일랜드 등과 더불어 경마가 가장 규모가 큰 갬블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카지노, 호주는 포커기계, 뉴질랜드는 게임머신이다. 캐나다와 이탈리아에선 복권이 가장 규모가 크고 일본에선 同表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빠짱코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의 경우 경마와 경쟁할 수 있는 갬블링은 복권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복권들과 경마가 경쟁을 해야할 시기가 머지 않아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마의 매력제고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表 1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경우 경마의 환급율이 복권의 환급율을 초과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表 13> 各種 갬블링의 賣出規模

(單位 : 억원, %)

	한국 (94)	미국 (95)	프랑스 (92)	이탈 리아 (94)	아일 랜드 (93)	캐나다 (94)	호주 (93-94)	뉴질 랜드 (95)	일본 ¹⁾ (93)	홍콩 (94-5)
1. 경마	17,729 (100)	4,777 (100)	61,048 (100)	20764 (100)	48,490 (100)	5,938 (100)	68,857 (100)	610 (100)	324,677 (100)	72,277 (100)
2. 복권	6,392 (36)	11,700 (245)	2,080 (3)		33,600 (69)	10,263 (173)	1,025 (1)		48,190 (15)	10,013 (14)
3. 복권 (Lotto)			22,560 (37)	27113 (131)			11,877 (17)	322 (53)		
4. 즉석복권			21,440 (35)	6200 (30)		1,760 (30)	384 (1)	85 (14)		
5. 카지노		23,400 (490)	156,800 (257)			550 (9)	24,040 (35)			
6. 축구복권 (totocalcio)				15655 (75)						
7. 축구복권 (totogol)				764 (4)						
8. 복권 (Enalotto)				1057 (5)						
9. 복권 (Totip)				1875 (9)						
10. 복권 (Lotterie)				1424 (7)						
11. 게임머신							58,633 (85)	644 (106)		
12. 오토 레이스									20,664 (6)	
13. 경정									132,365 (41)	
14. 경륜	728 (4)								118,390 (36)	
15. 빙고						6,600 (111)	3,489 (5)			
16. 포커기계							119,853 (174)			
17. Keno							1,995 (3)			

註 : 1) 일본 복권매출액은 1991년치임.

2) ()내는 경마를 100으로 한 수치이며 각국의 매출규모는 해외출장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참고자료는 『경마산업발전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3. 을 참조.

<表 14> 各種 賭博의 還給率

(單位 : %)

	한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경마	70	82	72.65	72	76	75
복권	50	50	60		49	46
스포츠복권			50	35		
즉석복권	50		50	41		
로또			52	50		
카지노			97			

註 : 각국의 환급률은 해외출장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의해 작성되었음. 『경마산업발전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韓國租稅研究院, 1996.3. 참조.

VI. 要約

1. 우리나라의 競走馬는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경마환경하에서 경주를 하고 있다.
2. 우리 경마의 1경주당의 마권매출액, 상금액은 세계 제 3위의 수준에 있지만 賞金의 對마권매출액 비율은 밑에서부터 세계 제 3위이다.
3. 우리나라 경마의 환급금 비율은 70% 수준으로 10대 경마국 중 가장 낮다.
4. 낮은 환급금 비율의 가장 큰 원인은 높은 稅率體系에 있다. 1996년 현재 각종 세율 합계는 마권매출액의 약 18%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5. 우리는 주요국중 마권관련세목의 중심세목인 마권세가 地方稅인 유일한 국가이다.
6. 우리나라는 미국, 브라질과 더불어 환급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두 나라보다 적용범위가 넓고 세율도 높다.
7. 馬主의 경마관련 상금소득은 유리지갑속의 소득처럼 투명도가 높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투명도가 낮은 여타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어 불평의 소지가 남아 있다. 이 문제는 소득의 투명도가 높은 사업소득자 전반에 관련된 문제로 보다 넓은 시각에 의한 접근이 필요하다.

8. 馬主賞金の 對競馬施行機關 收得金(=마권매출액-환급금-租稅)比率, 1着馬主의 상금비율, 馬主賞金の 직종간 배분에 있어서의 馬主 몫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
9. 경주마의 국내생산 확대문제는 양적 확대만큼 질적 개량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國際 경주마 시장은 需要者 中心市場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주요국의 경마가 피크期를 지나 調整期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10. 우리의 경우 경마와 競爭할 수 있는 갬블링이 多種多様하지 못해 競馬 優位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의 가장 강력한 갬블링이었던 '고스톱' 놀음의 代替財로 경마가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附錄 : 경마산업의 경제적 효과(캐나다 온타리오주)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마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⁷⁾를 소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캐나다와는 달리 경주마 생산산업이 크게 뒤져 있으므로 캐나다의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1993년 기준 온타리오주의 競馬産業이 다음과 같이 온타리오주의 경제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첫째, 支出額 기준으로 총 7억 7,000만캐나다달러에 달하는 産業이다. 이 가운데 1억 2,200만캐나다달러가 競馬場의 사용, 광고, 노무, 통신, 기타 運營費 등에 소요되고, 3억 5,200만달러가 競走馬 소유와 運營관련 비용인 調教師, 騎手의 賃金이나 便益, 仲介人 手數料, 競走馬 診療費, 財産稅 등에 사용되고, 2억 2,600만 달러가 競走馬의 飼育費用에, 6,900만 달러가 研究機關과 研究프로그램에 支出된다.

둘째, 이상의 지출은 온타리오주에 총 13억달러에 달하는 附加價値를 창출하였고 이는 競馬産業 1달러 지출당 1.73달러에 해당한다. <附表 1>에서 보듯 가장 높은 所得乘數(2.00)가 競馬場 關聯支出로서 온타리오주 平均 産業所得乘數인 1.35보다 매우 높다. 이유는 競馬場關聯 總支出에서 勞動集約的 서비스의 比重이 높고 地域的 範圍가 크기 때문이다.

7) Deloitte Touche Tohmatsu International, *Strategic Plan for the Ontario Horse Racing Industry*, July, 1995.

<附表 1> 온타리오州 競馬産業의 經濟的 效果

(單位 : 千달러,名,倍)

	경마장지출	경주마지출	사육비지출	기타지출	총 계
최초의 지출	122,400	352,557	226,686	68,620	770,263
부가가치					
직접	82,266	164,606	140,456	2,896	390,223
간접 및 관련	162,543	463,747	307,725	7,645	941,660
계	244,809	628,353	448,180	10,541	1,331,883
승수	2.00	1.78	1.98	0.15	1.73
고용					
직접	2,343	5,628	4,914	101	12,986
간접 및 관련	2,311	6,194	4,119	93	12,717
계	4,654	11,822	9,033	194	25,703
승수	1.99	2.10	1.84	1.92	1.98
노동소득					
직접	71,147	114,024	112,427	2,229	299,827
간접 및 관련	114,730	336,996	219,080	5,406	676,212
계	185,877	451,020	331,507	7,635	976,039
조세					0
연방정부	49,197	112,075	85,911	10,492	257,675
주정부	22,899	59,334	42,779	81,349	206,361
지방정부	17,022	19,242	16,978	321	53,573
계	89,128	190,651	145,668	92,162	517,609

資料 : Deloitte Touche Tohmatsu International, *Strategic Plan for the Ontario Horse Racing Industry*, July, 1995.

셋째, 競馬産業의 支出로 年間 2만 5,703명의 雇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直接 雇用과 間接 및 關聯雇用이 각각 12만 ,986명과 12만 ,717명으로 거의 유사하다. 競馬産業은 직접 관련외에 産業外部에서도 많은 雇用을 誘發한다. <附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높은 雇用乘數 2.10은 競馬費用과 관련하여 나타나는데 이는 每백만달러 費用마다 年間 17명의 雇用이 발생하고 전체 雇用을 고려하면 33명의 新規雇用이 확보되는 셈이다.

넷째, 競馬産業의 높은 雇用創出에 비해 年間 實質賃金所得은 2만 3,000달러로 낮다. 이유는 競馬産業이 勞動集約的이고 多數가 part-time으로 雇傭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政府(聯邦, 州, 地方政府)도 租稅收入이 5억 1,700만 달러가 되므로 큰 수혜자의 하나이다. 租稅收入 중 聯邦政府 收入이 가장 크다. 이와 같이 租稅收入은 競馬産業의 支出 1달러당 0.67달러의 租稅收入을 의미하며 이는 기타 産業이 0.50달러 未滿의 租稅收入을 나타내는 것과 比較해 볼때 매우 높은 數值이다.

요컨대 온타리오州的 景氣沈滯와 農業部門의 基盤縮小를 고려할 때 競馬産業은 온타리오州的 經濟 및 所得基盤 多樣化에 결정적인 役割을 하고 있으며 雇用創出面에서나 政府의 收入面에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높다.

參 考 文 獻

裴俊皓·金建洙, 「馬券稅의 特性과 稅負擔分布」, 한국조세학회 발표논문,
1996. 3.

裴俊皓·朴釘洙 外,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1996. 3.

日本中央競馬會, 『中央競馬便覽』, 1995.

日本中央競馬會 內部資料.

財政經濟院, 『租稅概要』, 1995. 4.

韓國馬事會, 『馬事年鑑』, 1994.

韓國馬事會 內部資料.

홍콩 Jockey Club 內部資料.

ECUS, *Annuaire 1995*, Tableau Economique Statistique et Graphique du
Cheval en France, Donnees 1994, UNIC(Union Nationale Interpro-
fessionnelle du Cheval), 1995.

UNIRE, *Annuario Statistico 1994*, 1995.

Deloitte & Touche Tohmatsu International, *Strategic Plan for the Ontario
Horse Racing Industry*, Ontario Horse Racing Industry Association,
July, 1995.

第 2 部

競馬産業 發展을 위한 租稅政策方向

朴釘洙

(韓國租稅研究院)

目次

I. 序論	44
II. 馬券賣出額の 配分	46
1. 控除率 水準과 控除內譯	46
가. 現況과 問題點	46
나. 改善方案	46
2. 租稅體系	47
가. 馬券稅 等 競馬關聯 稅目과 國稅·地方稅 配分	47
나. 還給金과 其他所得稅	52
다. 個人馬主와 所得稅制	54
3. 韓國馬事會 收得金の 配分	56
가. 競走賞金の 水準과 關聯 稅制	56
나. 競走賞金外 配分	64
III. 國內産馬 生産에 대한 支援方案	70
1. 現況과 問題點	70
2. 改善方案	72
IV. 競馬産業의 振興과 長期的인 稅源確保戰略	74
參考文獻	76

I. 序論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국민 전체적인 삶의 質은 비약적으로 진보하여 문화적인 餘暇活動의 추구가 최근 들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대중오락 겸 스포츠로서 競馬産業이 최근에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開發年代를 통하여 생존을 위한 경제성장 위주로 되어있던 산업정책의 결과 나타난 二重構造는 1996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OECD가입을 즈음하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산업에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競馬産業에 있어서도 構造調整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어 競馬를 바라보는 視角은 전혀 곱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경마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그러니까 規制와 支援 양 측면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 온 것도 사실이다. 競馬를 經濟活動의 일환으로서, 附加價値를 창출하는 産業으로 조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射倖行爲로 치부하여, 쉬쉬하며 방치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競馬關聯 租稅體系도 응당 조세저항이 전무한 ‘바람직한’ 稅源으로 여겨, 馬券稅는 물론 각종 附加稅(tax on tax)로 目的稅가 신설이 논의될 때마다 제일 먼저 그 부과대상으로 들먹여 지곤 했으며 실제로 教育稅와 農漁村特別稅가 신설되었거나 증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제는 競馬를 비롯한 레저 및 文化活動에 대한 租稅政策에 체계성을 확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국경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각국간의 租稅調和(tax harmonization)가 매우 중요해지는 세계화시대인 2000년 대에도 娛樂産業과 스포츠産業에 대한 과세가 적정한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고객의 수요 그리고 경마산업에 종사하는 경제활동인구를 감안한 産業政策的 고려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 높은 競馬를

즐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娛樂과 스포츠에 대한 조세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크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馬券賣出額의 配分問題에 관하여 國稅·地方稅의 조정 논의를 정리하고 長期的인 競馬産業의 발전을 위한 적절한 控除水準의 설정문제와 韓國馬事會, 馬主, 調教師 및 騎手, 기타 경마관련 전문종사자간의 賞金 配分體系上の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競走馬 生産과 관련한 租稅支援方案도 강구하였다. 특히 조만간에 慶州競馬場의 완공, 釜山과 光州競馬場의 신설 등 한국 競馬가 바야흐로 본격적인 成熟段階에 진입하려는 현 시점에서 競馬關聯 諸般 制度和 租稅體系의 정비에 대한 논의는 時宜性이 있다고 생각된다.

第2章에선 競馬關聯 租稅體系와 競馬關聯 稅源의 國家와 地方政府間的 配分問題를 논의하고 있다. 現在의 租稅體系로 계속 나아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바람직한 방향을 정하고 이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그 方向性을 잡는데 주된 目標을 두고 있다. 나아가서 馬券賣出額에 대한 控除額의 內譯과 控除額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馬券稅와 其他所得稅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控除水準과 其他所得課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競馬賞金의 수준과 支給體系와 그 構成에 대해 검토하고 韓國馬事會가 산하단체인 馬主協會와 調騎協會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第3章에선 國內産馬 生産의 필요성을 전제한 뒤 생산농가 지원을 강화할 경우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끝으로 第4章에선 이상의 정책논의를 요약, 정리하고 정책시사점을 모아 政策建議를 행한다.

II. 馬券賣出額의 配分

1. 控除率 水準과 控除內譯

가. 現況과 問題點

勝馬投票券 賣出額은 일정액의 控除分과 베풀한 競馬顧客들에 대한 還給分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의 現行 控除率은 1996년도 還給分基準 29%이며 稅金 18%, 韓國馬事會 收得金 11%로 구성된다.

稅金은 馬券稅 10%, 教育稅 5%, 農特稅 2%, 其他所得稅 1%이며 其他所得稅는 稅收가 賣出額 대비 1%라는 의미이다. 教育稅는 1995년까지 2%이던 것이 1996년 7월부터 5%로 인상되며 기타소득세는 1995년까지는 2%~3%수준이던 것이 1996년부터 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경마가 고급화되어가는 과정에서 出走頭數가 늘거나 競走馬의 수준차가 커지면 高倍率 馬券이 증가하고 其他所得稅가 늘어난다⁸⁾.

나. 改善方案

- 1) 우리의 馬券賣出額 대비 29%인 現行 公제율을 낮추어 나가야 한다.
- 2) 낮추는 대상에는 租稅 및 馬事會 수득금의 兩者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경마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하면 축소대상의 우선순위는 租稅,

8) 서울경마장을 대상으로 1990년 이후의 실적을 보면 1990년의 1.9%가 1994년에는 3.4%, 1995년에는 2.8%로 늘었다. 1994년의 경우 馬券賣出額 1조 7073억원에서 584억원의 其他所得稅가, 1995년에는 마권매출액 2조 1050억원에서 590억원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했다. 한국마사회 『馬事年鑑』 1994, p.169 및 내부자료.

마사회 소득금의 순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3) 租稅의 경우 馬券賣出額 대비 19%는 세계최고 수준이며 이를 12개국 평균치인 7.3%, 馬券賣出額이 큰 9개국 평균치 10.1%, 우리 다음으로 높은 프랑스의 15% 수준을 고려해 17% 수준으로 하향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 馬事會 收得金の 경우 주요국의 평균수준이지만 法人稅後 純收益이 마권매출액의 5.3%(1994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축소의 여지가 있다. 물론 1996년부터 1%포인트를 낮추어 11%가 되었지만 이를 10% 수준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5) 이렇게 되면 공제율은 27% 수준이 되지만 국제적으로는 일본을 포함해 주요국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25% 수준을 목표로 공제율을 낮추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租稅體系

가. 馬券稅 等 競馬關聯 稅目과 國稅·地方稅 配分

1) 競走·馬券稅

현행 馬券稅는 1942년 朝鮮馬券稅令에 의하여 설치되어 國庫納付金 5%와 馬券稅 4%의 稅率로 課稅되다가 1961년 12월 8일 國稅에서 地方稅인 道稅로 이양되면서 5%로 單一化되고 1963년에는 10%로 인상되었다. 1974년에는 일시적으로 20%의 稅率이 적용되기도 하였으나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10%의 稅率에는 변동이 없다. 國庫納付金이나 國稅로서의 發賣稅를 賦課하는 경우는

稅負擔의 높고 낮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競馬場의 위치에 따른 馬券稅源의 配分은 전혀 문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1961년 國稅의 地方稅 이양의 일환으로 道稅化된 馬券稅는 楸섬競馬場 시대에는 서울市에만, 그리고 果川競馬場과 濟州競馬場만이 運營되고 있는 현재에는 京畿道와 濟州道에만 국한된 稅源으로 地方稅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인 稅源의 普遍性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⁹⁾

뿐만 아니라 1994년부터는 競輪·競艇法이 시행됨에 따라 競輪·競艇의 勝者 投票券에 대해서도 勝馬投票券과 마찬가지로 課稅하기 위하여 馬券稅의 명칭을 競走·馬券稅로 변경하였다. 馬券稅의 형식적인 納稅義務者가 韓國馬事會인 것과 마찬가지로 競走事業者가 競走稅의 형식적인 納稅義務者가 되었다. 최근 競輪場과 場外發賣所에서 거둬들인 競走·馬券稅를 道稅에서 市·郡區稅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일부를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는 基礎自治團體長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場外發賣所에서 발매한 競走·馬券에 대한 稅額은 그 競馬場 소재지의 道와 場外發賣所 소재지의 道에 절반씩 납부하도록 地方稅法이 改正되어 잠정적인 타협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¹⁰⁾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場外發賣의 稅負擔을 대부분 場外發賣所가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이 진다는 점에서 稅源의 配分이 이와 같이 절반씩 이루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馬券稅가 地方稅로 되어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도 場外發賣가 이루어지는 경우 여기서 거둬진 稅金의 歸屬主體는 당해 場外發賣所가 위치한 地域政府이며 競

9) 이는 1976년부터 1988년까지 시군세로 전환된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한 문제지적이다.

10) 1994년 지방세법 개정시 부칙 제5조(장외발매소 발매분에 대한 안분기준의 특례)에 잠정적인 기준으로 1995년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8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20을 납부하고, 1996년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6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40을 납부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였다.

馬場이 소재한 地域政府에는 전혀 配分이 없고 다만 競馬場에 대해 약간의 電
送手數料를 교부하고 있는 점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競馬場과 場外發賣所가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 稅源이 지나치게 편재되어 있는 競走·馬券稅를 계속해서 道稅
로 존치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에 설득력이 있다. 물론 競馬場이
韓國馬事會의 계획대로 조만간에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場外發賣所 역시 전국
적으로 확산될 경우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저절로 해결되는 측면이 있을 것임
로 馬券稅의 國稅·地方稅 調整問題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 외국 馬券稅의 配分事例를 참고하면 聯邦型國家(美國, 獨逸, 캐나다,
濠洲)의 경우 주로 州政府(state government)의 세원으로 활용되거나 畜産基
金(브라질)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반면에 單一型國家의 경우는 예외없이 國稅
로 활용되거나 國庫納付金으로 납입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름대로의 시사점
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地方自治의 역사가 일천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財政需要는 폭증하는 데 비해 자체 재원 마련에는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
적으로 열위에 있으므로 馬券稅를 國稅化하게 되면 이 금액에 상응한 재원이
地方交付稅의 상승을 통해 보전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表 17> 主要外國의 馬券稅 配分現況

(單位: %)

	馬券稅率	國稅(聯邦稅)	地方稅	
			道稅(州稅)	市郡稅
1. 미국	2.87	-	2.87	-
2. 영국	8.4	8.4		
3. 프랑스	12.9	12.9	-	-
4. 독일	0.67	-	0.67	-
5. 이탈리아	5	5		
6. 아일랜드	10	10		
7. 캐나다	8.2	0.8	7.4	-
8. 호주	6.75~10	-	6.75~10	-
9. 뉴질랜드	7.9	7.9	-	-
10. 일본	12~13	12~13	-	-
11. 홍콩	12.77	12.77		
12. 브라질	1.5	1.5 ¹⁾	-	-

註 : 브라질의 경우 연방정부 농산부의 축산기금으로 납부함.
 資料 : 韓國租稅研究院, 『競馬産業發展을 위한 租稅政策方向』, 1996.3.

2) 教育稅와 農漁村特別稅

현행 競走·馬券稅에 부가하여 賦課하고 있는 租稅는 目的稅로서 教育稅와 農漁村特別稅가 있는바, 위의 두가지 租稅는 教育과 農漁村地域開發 재원마련을 위한 目的稅로서 競走·馬券稅額이 과연 적정한 課稅對象이며 현재의 稅率은 적정한가를 租稅理論的으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두가지 稅

目 모두 國稅이나 教育稅의 경우 全額 地方教育費 特別會計에 地方教育讓與金の 形態로 교부되고 있으며, 農漁村特別稅의 경우도 일부(150분의 19)가 地方讓與金 재원으로 전입되어 地域開發事業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目的稅로서의 受益者 負擔原則을 전혀 적용할 수 없는 현재와 같은 복잡한 附加稅(piggy backing)體制는 租稅體系와 租稅行政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納稅協力費用도 지나치게 크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물론 재정지출수요는 명확하고 교육이나 WTO에 따른 농어촌살리기 등 명분이 확실하여 이를 위해 전체적인 기간조세부담을 늘리기 보다 전반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을만한 부문에 附加稅로 부과하게 된 教育稅와 農漁村特別稅는 租稅原則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위의 두가지 稅目은 모두 本稅에 통합되거나 時限滿了後 폐지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教育稅의 경우 1995년도 교육개혁관련 재원마련의 일환으로 引上된 附加分, 즉 馬券세액의 30%는 재원마련계획에 따라 1996년 7월부터 1998년까지 限時的으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長期的으로는 永久稅化한 教育稅部分, 즉 馬券세액의 20% 역시 本稅인 馬券稅에 통합하여 징수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방향이라 생각된다. 農漁村特別稅 역시 限時的으로 入법된만큼 2003년이 되면 日沒法(sunset law)의 취지를 살려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될 경우 統合된 馬券세率을 인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998년까지 매출액의 17%(기타소득세를 제외한 경우)에서 2003년까지는 14%, 2003년부터는 12%의 세부담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還給金과 其他所得稅

1) 現況과 問題點

還給金이 馬券購入金額의 一定倍率 이상을 넘어서면 現行 所得稅法은 其他 所得稅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同 倍率은 1995년까지는 50배이었으나 1996년부터 100배로 인상되었다. 稅法이 규정하고 있는 其他所得¹¹⁾에는 賞金, 현상금, 포상금, 복권 당첨금, 경품권 당첨품, 저작권 양도대가, 사례금, 專屬契約金 등이 포함된다.

現在 還給金에 대한 其他所得稅 課稅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보자. 첫째, 100배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 설정되었느냐는 것이다. 95배 배율과 105배 배율의 경우 실제 還給金에서 95배 배율의 馬券 還給金이 105배 배율의 馬券의 還給金보다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유는 105배 馬券의 平均稅率이 더 높아져 버리기 때문이다.

둘째, 높은 배율의 所得에 대해 累進課稅를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現행의 2단계 限界稅率 구조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多段階 超過累進稅率構造로 설정하는 것이 특정영역을 경계로 급격하게 稅負擔이 증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高所得에 대한 累進課稅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現行 馬券關聯稅에선 外형상으로 消費稅인 馬券稅와 이에 부가되는 教育稅, 農特稅가 부과되고 있어 所得稅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보는 각도를 달리해 보면 이들 馬券關聯稅의 태반이 所得稅라고 할 수 있다. 곧 馬券에서 발생하는 所得(곧 資本利得)에 대해 20%의 平均實效稅率로 所得稅가 부과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이렇게 되면 其他所得課稅는 정책

11) 소득세법 제 21조

당국의 의도와 달리 累進的인 所得課稅 手段으로 기능하고 있다.

넷째, 현행의 高倍率 馬券에 대한 벌칙적인 課稅로 實質倍率이 낮아져 競馬顧客이 離脫할 경우 競馬産業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稅收 또한 줄어드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高倍率馬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경마의 發達 및 高級化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多數의 優秀馬가 登場해 競馬水準이 높아지거나 수준급 말의 供給이 늘어 興味提高 차원에서 出走頭數를 늘리면 高倍率馬권이 다수 발생하게 된다. 곧 其他所得稅 課稅가 競馬産業의 발전과 稅收 增大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 看過되고 있다.

다섯째, 국제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其他所得課稅는 극히 예외적인 課稅 措置이다. 우리가 살펴본 主要國 中 美國만이 유사한 제도를 지니고 있다. 美國에선 還給金이 5천달러 이상이고 300배 이상의 高倍率일 경우에 28%의 所得稅가 源泉徵收된다. 주의할 점은 美國 基準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과 美國 馬券稅率(州政府의 Pari-mutuel tax)이 2%~4%로 낮아 실질적인 所得課稅 比率(馬券賣出額 대비)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사실이다.

2) 改善方案

- 1) 還給金を 크기에 따라 累進的으로 所得課稅하는 것이 정책목적이 아니라면 其他所得稅를 폐지하고 馬券稅의 세율을 上向調整하여 稅收中立的의 도를 한다.
- 2) 還給金を 크기에 따라 累進的으로 所得課稅하는 것이 정책목적이려면 적용기준을 현재의 還給倍率 單一基準에서 金額과 還給倍率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경마의 質的 水準의 향상에 따라 同 적용금액과 환급배율을 상향조정해 간다. 이때 미국의 적용기준인 金額 50만원, 倍率 300배를 참조한다.

다. 個人馬主와 所得稅制

1) 現況과 問題點

個人馬主制가 도입된 1993년 8월 이후 馬主에 대한 租稅負擔이 무겁다는 주장이 많았다. 가령 1994년도 귀속분 소득에 적용되는 所得標準率 26.6%(書面申告率 적용시 실질 所得標準率은 18.6%)가 현실을 무시한 수치라는 것이 그것이다¹²⁾. 왜냐하면 같은 해 馬主들의 平均所得率인 8.7%를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馬主들은 競馬所得外에 다른 所得(勤勞, 事業, 利子, 配當, 賃料所得 등)을 지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綜合課稅對象者로 다수가 最高限界稅率인 40%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런데 綜合課稅에 따른 平均實效稅率은 약 36%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¹³⁾.

馬主들의 平均所得率이 낮은 이유는 競馬賞金에 馬主協會, 調騎協會에 대한 支援金이 포함되어 馬主의 외형상 소득을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¹⁴⁾. 주요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競馬賞金の 40% 상당이 純粹賞金이 아닌 福利厚生費라고 하는 것은 類例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왜곡된 것은 法人稅法이 馬主協會와 調騎協會를 指定寄附金 혹은 固有目的事業上의 寄附金 지원단체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馬事會側이 변칙적으로 이들 두協會를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12) 평균소득률은 총수입금액 255.6억원, 소득금액 22.2억원에서 계산됨. 마주협회 “1995년도 상금(안)” p.17의 표.

13) (서울) 마주협회 試算值.

14) 마주의 총수입은 통상적인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과 달리 다른 사업자에 대한 단순 이전소득까지를 포괄한다. 유사한 문제가 대리점 경영사업자 등의 총수입 계산과정에서도 발생한다.

현재와 같은 방식이 유발시키는 문제는 所得算出時 書面申告納付를 선택하지 않은 一部馬主의 所得規模를 실제 이상으로 확대시켜 왔다는 점이다.

2) 改善方案

- 1) 경마관련 사업소득의 경우 여타 사업소득과 달리 지급처가 한국마사회인 관계로 소득이 100% 노출되는 점에서 근로소득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법인거래에서 발생하는 투명한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우대조치를 도입해 馬主의 사업소득을 포함한 전체 대상소득을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2) 근본적으로 馬主들이 記帳을 유지해 申告納付制¹⁵⁾의 틀내에서 번 만큼 稅負擔을 할 경우 상금지급체계의 왜곡으로 인한 세부담 증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3) 주요국의 경우 80~90%의 馬主들이 赤字馬主이다. 문제는 우리의 경우 이들 나라와 비교해 個人馬主制 경마의 역사가 日淺하므로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다. 다만 단일 경주당 마권매출액의 규모가 세계 최상위 수준에 있고 이것이 빠른 속도로 증가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赤字馬主의 숫자가 50%를 웃도는 것은 재고할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의 個人馬主制에는 진입장벽이 있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4) 馬主業의 黑字, 赤字의 경계선이 賞金の 絶對水準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馬券賣出總額에서 얼마만큼을 賞金으로 지불할 것인가 하는 適正賞金水準의 문제를 深度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15) 실제 重稅感을 느끼는 마주 중 일부는 소득표준율의 적용을 피해 신고납부제를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記帳을 하지 않고 所得標準率을 적용받으려는 一部 馬主들에게서 발생한다.

3. 韓國馬事會 收得金の 配分

가. 競走賞金の 水準과 關聯 稅制

1) 現況과 問題點

우리나라의 競馬關聯 賞金水準을 주요 외국과 비교해 보면 <表 18>과 같다. 우리나라보다 賞金水準이 낮은 국가로는 홍콩, 日本, 그리고 英國이 있다. 물론 賞金水準은 各國에 따라 競馬施行의 形式的인 差異와 單位競走當 賣出額의 規模에 따라 다양하므로 단순비교가 어렵기는 하나 競馬先進국에 비해 絶對的인 劣位에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보다 낮은 수준인 홍콩과 日本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單位 競走當 賣出額이 평균 9배 내지 5배나 되므로 經濟的인 競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의 단순비교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表 18> 主要 外國의 競馬賣出額 對比 償金 水準

(單位 : 億圓, %)

	馬券賣出額(A)	賞金(B)	比率(B/A)
한국	17,729	317	1.79
미국	132,895	8,185	6.16
영국	56,694	635	1.12
프랑스	52,493	2,343	4.46
독일	4,419	538	12.16
이탈리아	17,811	1,251	7.02
아일랜드	1,058	145	13.66
캐나다	10,893	1,082	9.93
호주	62,288	1,436	2.31
뉴질랜드	4,024	209	5.18
일본	280,906	4,684	1.67
홍콩	72,029	279	0.39
브라질	5,656	841	14.87

註 :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4년 기준이며 그의 국가들은 1993년 기준임.

資料: 韓國馬事會, 『馬事年鑑』, 1994.

日本中央競馬會, 『中央競馬便覽』, 1995.

한편 현행 競馬賞金の 支給體系에서 문제가 되는 競馬關係者는 馬主와 調教師이다. 특히 馬主의 경우 1995年 馬事會로부터 받은 賞金 384억원 중에서 馬主의 實收得 賞金은 48억원이며, 調教師의 경우 馬主로부터 받은 賞金 221억원과 委託管理費 67억원을 합한 288억원 중에서 調教師의 實收得 賞金은 31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馬主와 調教師는 實所得에 비해 공급가액의 外形基準에 의한 과다한 租稅를 부담해야 한다.

馬主와 調教師가 과다한 租稅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왜 馬主와 調教師가 과도한 租稅를 부담하게 되었는지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事業者의 課稅標準과 稅額의 결정방법을 살펴보자. 1994년 도 귀속분 所得申告時까지 施行되었던 政府賦課 課稅制度에 따라 馬主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個人馬主와 調教師는 사업소득자로서 記帳者의 경우 所得金額이 書面決定 신고기준 이상이면 서면심리로 所得稅를 결정하였다. 여기서 서면결정 신고기준은 收入金額에 標準所得率을 곱한 金額에 다시 書面申告率을 곱한 金額이다. 반면 記帳者로서 所得金額이 서면결정 신고기준 이하이면 실지조사로 所得稅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無記帳者의 경우 추계대상이 되어 收入金額에 標準所得率을 곱한 金額이 課稅標準이 되고 他 所得과 합쳐서 綜合 所得稅를 납부하게 된다.

1994년도 귀속분 所得의 경우 馬主에게 24.2%의 標準所得率이 적용되었으며, 書面申告率 70%가 적용되면 實質標準所得率은 16.9%이었다. 반면 1994년 馬事會로부터 馬主가 받은 競馬賞金 263억원 중에서 馬主의 所得은 21억원이었으므로 馬主의 平均所得率은 8%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平均所得率이 낮은 이유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馬主協會와 調騎協會에 대한 支援金과 調教師, 騎手 등에 대한 賞金이 馬主의 個人所得으로 계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調教師의 경우에도 馬主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94년도 귀속분 所得의 경우 24.2%의 標準所得率이 적용되었으며, 書面申告率 70%가 적용되면 實質標準所得率은 16.9%이었다. 반면 1994년 馬主로부터 調教師가 받은 競馬賞金 212억원 중에서 調教師의 所得은 25억원이었으므로 調教師의 平均所得率은 11.8%에 지나지 않는다. 調教師는 個人所得과 무관한 調騎協會에 대한 支援金과 騎手に 대한 賞金이 그의 個人所得에 포함되고 있음에 따라 實所得에 비해 공급가액의 外形基準에 의한 과다한 租稅를 부담하고 있다.

이 외에도 調教師의 경우 騎手·管理士의 복지후생비는 收得賞金에 비례하여 調教師의 課稅標準으로 합산되나, 調教師의 비용인정은 所屬騎手, 管理士분만 인정되므로 調教師別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騎手와 管理士를 적게 고용하고 賞金を 많이 收得한 調教師는 騎手와 管理士를 많이 고용하고 賞

금을 적게 收得한 調教師에 비해 과세 형평상 불리하게 된다.

2) 改善方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競馬賞金の 支給體系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馬主와 調教師의 收入에 다른 事業者의 單純移轉所得까지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實所得에 비해 공급가액의 外形基準에 의한 과다한 租稅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馬主와 調教師가 기장을 하고 이에 따라 所得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그러나 無記帳者로 남아서 標準所得率의 적용을 계속 받으려는 馬主와 調教師가 많다면 次善策으로 標準所得率을 引下하는 方案과 馬主와 調教師의 收入에 다른 事業者의 單純移轉所得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가) 標準所得率을 引下하는 方案

현행 競馬賞金 支給體系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標準所得率을 引下하는 方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競馬賞金の 支給體系에서 발생하는 問題點의 근본적인 原因을 살펴보면 馬主 중 일부가 無記帳者로 남아 있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馬主 중 일부가 無記帳者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지 그 理由는 불분명하다. 記帳할 능력이 없다거나 記帳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記帳者가 되기보다는 無記帳者로 남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만일 馬主가 기장을 하고도 標準所得率과 書面申告率이 높아서 書面申告로는 과다한 租稅를 부담하게 된다면 實地調査로 正當한 稅金을 부담할 수 있었다.

특히 1995년도 所得分 申告부터 政府賦課課稅制度에서 申告納付制度로 전환되어 無記帳者의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기초로 簡易所得金額 計算書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標準所得率은 장기적으로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標準所得率을 인하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너무 短期的인 解決策이며, 根本的인 解決策이 될 수는 없다.

나) 支援金を 寄附金 形態로 轉換하는 方案

현행 競馬賞金 支給體系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馬主協會와 調騎協會에 대한 馬事會의 支援金を 寄附金形態로 전환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兩協會는 法人稅法 제18조(施行令 제42조, 施行規則 제17조)에 規程되어 있는 指定寄附金 인정단체가 아니므로 兩協會에 대한 支援金を 寄附金形態로 지원할 경우 이 寄附金은 馬事會의 損金에 산입되지 않으며, 兩協會는 贈與稅를 납세할 의무를 갖게 된다. 따라서 支援金を 주는 馬事會뿐만 아니라 支援金を 받는 馬主協會와 調騎協會 모두 불리하게 된다.

결국 馬主協會와 調騎協會에 대한 支援金を 馬事會의 寄附金形態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法人稅法의 改正이 필요하다. 法人稅法施行令 제42조에 規程된 指定寄附金の 범위에 馬主協會와 調騎協會를 추가하거나 法人稅法 施行規則 제17조에 規程된 公益性寄附金の 범위에 馬主協會와 調騎協會를 추가하여야 한다.

法人稅法의 改正을 위해서는 馬主協會와 調騎協會가 指定寄附金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만큼 公益性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法人稅法施行令 제42조에 規程된 指定寄附金の 범위와 指定寄附金の 범위에 포함

되는 公益性寄附金の 범위는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公益性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으로 지정된다. 指定寄附金を 받을 수 있는 단체와 馬主協會 및 調騎協會를 비교해 볼 때 馬主協會 및 調騎協會가 韓國馬事會가 아닌 다른 法人으로부터도 寄附金を 받을 수 있을 만큼의 公益性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馬主協會와 調騎協會는 공통적으로 회원의 권익보호 및 상호친목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日本의 경우 日本中央競馬會는 公共法人으로 분류되어 法人稅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馬主協會는 公益法人으로 분류되어 法人稅 基本稅率 37.5%보다 낮은 27%의 法人稅를 내고 있다. 또한 馬主協會는 寄附金 稅制上 特定公益増進法人으로 분류되어 他 法人으로부터 寄附金を 쉽게 받을 수 있다.

日本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馬主協會와 調騎協會가 指定寄附金を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競馬賞金の 支給體系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를 예로 들어 우리도 馬主協會와 調騎協會가 指定寄附金を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日本은 法人의 기부행위에 대해서 稅制上 비교적 관대한 나라이며, 또한 競馬關聯단체들도 사회적으로 公益性을 인정받고 있는 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競馬가 단순한 賭博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건전한 대중 레저 스포츠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馬主協會와 調騎協會가 指定寄附金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만큼 公益性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향후 競馬가 경제활동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제대로 인식되고 아울러 競走馬 생산산업도 발전하게 되면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다) 馬事會의 固有目的事業 準備金 使用으로 인정받는 方案

현행 競馬賞金 支給體系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馬主協會와 調騎協會에 대한 馬事會의 支援金을 馬事會의 固有目的事業 準備金 使用으로 인정받는 方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固有目的事業은 非營利內國法人의 法令 또는 定款에 규정된 設立目的을 직접 수행하는 事業으로서 法人稅法 第1條 第1項 第1號의 규정에 의한 收益事業 外의 事業이라고 同法 施行令 第17條 第3項에서 규정하고 있다. 馬主協會와 調騎協會에 대한 支援金이 馬事會의 固有目的事業準備金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는 韓國馬事會法 제36조 제6호에 規程되어 있는 馬事會의 固有目的事業이 法人稅法上 收益事業外의 事業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韓國馬事會法 제36조 제6호에서는 馬事會의 目的事業 중의 하나로 다음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法人에 대한 出資·出捐 및 補助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競馬의 施行에 관한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으로는 競馬의 개최, 말·馬主 및 服色의 등록, 調教師·騎手의 免許 및 裝蹄를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 騎手の 양성 및 훈련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競馬의 진흥에 관한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으로는 말의 개량증식·육성 및 그 기술개발과 보급, 말의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연구, 말의 이용에 관한 지도장려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축산법 제44조의 規程에 의한 畜産振興基金에의 출연이다.

넷째, 競馬場 안의 간이체육시설 및 시민위락시설의 設置·運營의 사업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馬事會의 目的事業을 그 업무의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첫째와 넷째 업무는 收益事業에 해당하고 둘째와 셋째 업무는 收益事業外의 事

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法人稅法施行令 第2條 第1項은 收益事業에 포함하지 않는 事業의 範圍를 매우 좁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둘째와 셋째 업무도 法人稅法上의 收益事業外의 事業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되어 있다. 즉, 馬事會가 둘째와 셋째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收益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法人稅法施行令 第2條 第1項에 열거되어 있는 收益事業外의 事業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馬主協會와 調騎協會에 대한 支援金을 馬事會의 固有目的事業準備金 지출로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라) 現行 競馬賞金の 支給體系 維持方案

競馬賞金の 支給體系를 기본적으로는 現行 그대로 유지하되 問題點을 改善하는 方案을 검토해 보자.

馬事會가 馬主에게 모든 賞金을 지급하고 馬主가 馬사회로부터 받은 상금 중 상당부분을 다른 경마관련자에게 지급하는 現行 競馬賞金の 支給體系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도 이와같은 支給體系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支給體系를 유지하면서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問題가 되지 않는 것은 標準所得率과 같은 制度가 없고 申告納付制度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競馬賞金の 支給體系를 現行 그대로 유지한다면 馬事會의 상금책정방법을 지금과는 달리할 필요가 있다. 現行은 馬事會가 직접 調教師, 騎手, 管理師의 상여금, 가족수당 등의 복리후생성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賞金을 집행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馬主의 소요경비를 계산하여 적절한 수준의 賞金을 확정하여 이를 집행하는 方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방법에 따르면 調教師, 騎手, 管理師의 복리후생성 보조금액을 결정하는 주체는 馬事會가 아니라 馬主

가 되어야 하며, 馬主는 調教師, 騎手, 管理師와의 계약에 의해서 賞金을 지급하면 된다.

나. 競走賞金外 配分

1) 現況과 問題點

競馬關聯 稅負擔은 위에서 논의한 租稅이외에도 競馬施行體(韓國馬事會)의 收入金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实效性이 있다. 그 이유는 競馬에 참가하는 고객에게 있어서 의사결정에 중요한 것은 순순한 還給率(현재 71%)이며 控除되는 29% 안에는 各種 稅金(馬券稅 10%, 農特稅 2%, 教育稅 2%, 其他所得稅 3%)과 함께 馬事會 收得金 12~13%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재 馬事會 收得金 12~13% 중에서 馬主, 調教師, 騎手, 管理士 등에게 주어지는 賞金의 비중은 1.7%수준으로 1994년 기준으로 馬事會의 순수한 收益金 비중은 11.3%으로 나타난다 (<表 19> 참조).

<表 19> 서울 競馬賣出原價 規模와 構成比(1994)

(單位 : 백만원, %)

	金額	構成比
馬券賣出額	1,707,283	100.0
賣出原價		
實還給金	1,204,153	70.5
諸稅 計	280,858	16.4
其他所得稅等	58,374	3.4
馬券稅	170,728	10.0
教育稅	34,146	2.0
農特稅	17,610	1.0
馬事會收入		
純收得金	193,749	11.3
賞金	28,198	1.7
절사금	325	0.0

資料: 韓國馬事會, 『馬事年鑑』, 1995.

<表 20> 韓國馬事會 剩餘金 處分內譯

(單位 : 백만원)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剩餘金	計	10,855	33,801	30,253	33,500	8,368	34,674	45,777	54,011	49,035	106,803
處分	資本金				28,000	30,000					
	利益準備金						6,800	9,000	10,600	9,600	21,200
	損失補填準備金										
	特別積立金			16,476	5,000	7,000	17,000	22,500	26,500	24,000	53,000
	企業合理化積立金					1,000					
	競馬事業擴張積立金						10,200	13,500	15,900	14,400	31,800
	任員退職積立金										
	올림픽事業基金	10,700	33,300								
	任意積立金			13,300							
次期移越剩餘金	155	501	47	500	368	674	777	1,011	1,035	803	

資料 : 韓國馬事會, 『馬事年鑑』, 各년도.

<表 20>에 의하면 1994년도 馬事會의 當期順利益은 1,060억원이며 特別積立金에 10분의 5, 利益準備金에 10분의 2를, 나머지는 대부분을 競馬事業擴張積立金에 配分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韓國馬事會法 제42조와 同 施行令 제23조 규정에 의해 特別積立金を 畜産振興基金과 農漁民子女의 獎學事業 기타 農漁村 社會福祉增進事業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타당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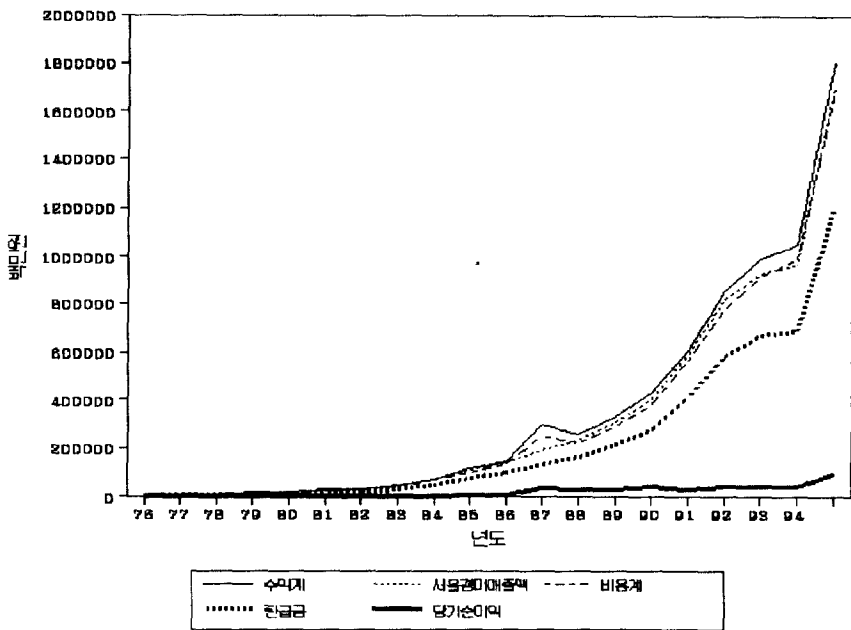
韓國馬事會法 제42조(손익금의 처리)에 따르면, 馬事會는 매 사업년도 결산 결과 利益이 생길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① 移越損失金の 보전
- ② 자본금(1,300억원)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の 10분의 2 이상의 利益準備金에 적립
- ③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の 10분의 3 이상의 競馬事業擴張積立金에의 적립
- ④ 特別積立金에의 적립

또한 同 條 제4항에 特別積立金の 사용용도를 畜産振興, 農漁民子女獎學事業 기타 農漁村社會福祉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5항에서는 積立金を 사용하고자 할 때, 文化體育部 長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同 施行令 제23조(特別積立金の 용도)에서는 特別積立金の 10분의 8에 해당하는 金額을 畜産法에 의한 畜産振興基金에 출연하고, 나머지 金額은 文體部 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漁民子女의 獎學事業 기타 農漁村 社會福祉事業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韓國馬事會에서는 1994회계년도에 剩餘金 1,068억원을 利益準備金에 10분의 2인 212억원, 競馬事業 擴張積立金에 10분의 3인 318억원, 그리고 特別積立金에 10분의 5인 530억원으로 處分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하여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馬事會는 非營利特殊法人으로 이익의 개념이 다른 營利法人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圖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1975년 이래 當期純利益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특히 1994년에는 1,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賣出總額이 결국 馬券의 總購買額이고 賣出原價를 구성하는 項目이 결국 賞金과 還給金, 그리고 馬券稅 등 諸稅라고 할 때 利益의 概念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圖 1> 賣出額 및 費用推移



참고로 韓國馬事會法 제1조(目的)에 의하면 馬事會의 존립목적으로 馬事の 振興 및 畜産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馬事の 振興을 위해

서는 還給比率을 제고하여 利益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나 畜産의 發展을 위해서는 이익을 많이 내서 畜産振興基金으로의 출연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한바 두가지 목적간의 利害相衝(trade-off)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利益金의 處分이 정당하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畜産振興基金에 10분의 8을 출연하고, 나머지는 결국 文化體育部와 조정에 따라 쓰여지고 있는 현재의 행태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檢討가 있어야 할 것이다. 1994년의 경우 1993년에 特別積立된 총액 240억원에다 전년도에 次期移越된 10억여원을 합해, ①畜産發展基金 192억원, ②農漁村靑少年育成財團 設立 65.5억원, ③農漁民文化體育센타 建立支援 16.9억원 등에 支援되고 있다.

畜産發展基金은 畜産物輸入利益金, 代替草地造成費, 韓國馬事會 納入金, 基金運營收益金 등으로 구성되어 大農家 金融支援時 재원별로 구분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統合運營하여 馬事會에서 출연한 基金造成額의 활용 양태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만 1995년도 養畜農民에게 지원된 6,404억원 중 韓國馬事會에서 납입한 424억원에 해당하는 6.6%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畜産發展基金으로 지원되는 事業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畜産業 構造改善이며 다음이 畜産物 需給 및 價格安定으로 나타난다.

競走馬의 生産과 관련해서는 種馬導入時 購入資金의 지원이 1995년의 경우 174두 12억 1,800만원을 2년거치 3년 均等상환 연리 5%로 100% 융자해 주고 있으며, 競走馬 生産團地造成 및 飼育施設費 支援이 같은 해 27억 9,900만원 규모로 5년거치 10년 均等상환 연리 5%로 70% 융자해 주고 있다. 한편 他家畜의 경우 5년거치 10년 均等상환 연리 5% 70%를 융자해 주고 있어 種牝馬보다 나은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어 형평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競走馬 生産을 위한 導入資金과 施設資金의 융자에 있어 조금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馬事會의 納入금이 競走馬 生産支援으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장기적인 競走馬 生産産業의 발전을 위한 支援戰略이 강구되

어야 할 것이다.

셋째, 馬事會法에서는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 積立金の 사용처가 下位法體系인 施行令에서는 文化體育部 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法體系上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施行令이 特別積立金を 사용하는 용도를 畜産振興基金 出捐과 農漁民子女의 獎學事業 其他 農漁村 社會福祉增進事業으로 결정된 것은 韓國馬事會의 監督機關이 農林水産部에서 文化體育部로 이관되면서 정치적으로 타협된 것으로 파악된다.

2) 改善方案

韓國馬事會 收得金の 비중을 축소하여 還給率을 높이거나 賞金水準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馬事會가 純利益金を 5.3%씩이나 내서 이를 경마발전을 위하여 投資積立하거나 畜産基金에 출연하는 것과 경마고객에 대한 환급률을 제고하여 고객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거나 상금수준을 높여 경마시행에 참여하는 競馬産業關聯 從事者(stakeholder)에 대한 급부를 제고함에 따른 良質의 競馬를 제공하게 하는 것간에 가치판단이 있어야 한다. 연구자는 競馬産業의 發展을 위해서는 生産者와 關聯從事者에 대한 賞金水準을 제고하고 還給率을 제고하는 쪽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III. 國內產馬 生産에 대한 支援方案

1. 現況과 問題點

國內產馬의 生産과 品質改良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식된다.

첫째, 국내 競馬産業이 대외의존적 성격에서 벗어나 안정된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국내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競走馬生産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둘째, 우수한 國內產馬를 생산하고 보급함으로써 지금까지 경주마를 독점하여 오던 외국산마의 輸入을 代替하여 外貨절약을 이룰 수 있다. 셋째, 우수한 國內產馬의 생산은 낙후된 畜産農家의 소득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되며 UR타결 이후 시급한 현안이 된 우리나라 農業의 構造改善과 業種多様化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우수한 國內產馬의 생산은 해외 시장으로 우리 축산업이 진출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우수한 國內產馬의 생산은 競馬를 건전한 국민스포츠로서 정착케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내산마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支援의 外延的·內在的인 조건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外延的인 조건의 검토란 국내산마 생산에 대한 정부지원이 UR協定の 規範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검토하여 보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UR의 補助金 및 農産物協定에서는 政府補助金を 禁止·相計可能·許容으로 구분하여 規制하고 있다. 만일 國內產馬 생산을 위한 政府支援이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다면 사실상 정부지원은 지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까지 진행된 검토에 의하면 국내산마 생산에 대한 정부지원은 UR협정상 補助金協定이 아닌 農産物協定の 대상이며 生産獎勵에 대한 補助金으로 許容補助金으로 판단되고 있다. 만일 이 과정에서 경주마 생산지원이 축산업이라는 特定産業에 대한 補助金支給으로 판정될 경우 UR협정에 의하여 그에 상

응하는 相計措置가 취해질 것이다. 그러나 상계조치란 결국 제소내용의 검토 및 조사, 피해금액의 추정 등 일련의 복잡한 과정과 긴 시일이 필요한 것이니 만큼 이를 지나치게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상계조치를 위해서는 雙務協商이 선행되어야 하느니 만큼 協商力에 따라서는 그다지 크게 우려할 만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支援의 內在的인 조건에 대한 검토란 국내산마 생산에 대한 정부지원이 内部的으로 필요한 分野와 規模 및 그 適合性에 대한 검토를 의미한다. 1994년 현재 우리나라의 競馬産業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필의 총수는 1,542두로 이 중 경주마는 1,187두이며 승용마 108두, 목장마 237두, 시험마 10두로 분포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서 國內産馬는 총 325두로 경주마 105두, 승용마 20두, 목장마 198두, 시험마 2두로 분포되어 있다.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국내산마중 경주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馬匹中 競走馬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여 매우 낮다는 점이다.

1994년 현재 馬匹의 輸入은 매월 약 89두씩 연간 1,000마리를 상회하는 마필이 수입되고 있다. 그러나 동 기간중 國內産馬의 생산은 민간에서 124두, 마사회에서 18두로서 총 142두에 머무르고 있다. 國內産馬 생산농가는 일정 규모를 갖춘 企業型 牧場이 10호이고 零細農家가 20호로 추계된다. 이상의 통계에서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은 현재 국내산마의 생산은 전체 필요 물량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그나마도 경주에 출전할만한 수준의 품질이 생산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마필을 생산할 경우 드는 費用은 飼料費, 人件費, 診療費, 飼養道具費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지관리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19개월부터 24개월 사이의 말인 경우 인건비, 사료비, 보건비, 사양도구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7개월부터 18개월 사이의 단순방목기의 말인 경우 사료비, 인건비, 보건비, 사양도구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종합적으로 馬匹의 生産 및 維持管理에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飼料費이며 그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人件費임을 알 수 있다.

2. 改善方案

國內産馬 生産을 支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필보유에 드는 비용,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飼料費와 人件費의 負擔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판단의 가장 큰 前提는 種府와 馬舍使用 그리고 診療費用에 대하여 韓國馬事會가 지금과 같이 廉價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준다는 전제하일 것이다.

현재 적용가능한 생산자체에 국한된 세제지원방안으로는 生産農家에 대한 所得稅額減免, 生産에 필요한 諸般經費의 所得控除 擴大, 生産 및 管理維持에 필요한 기자재의 特別償却 인정 혹은 稅額控除, 生産 및 관리유지에 필요한 각종 물품에 적용되는 附加價値稅 低稅率 적용 등이 있다.

이 중 사료비의 부담절감을 위해서는 사료비에 적용되는 附加價値稅率의 低率課稅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의 附價稅 零細率 적용 방법이 생산농가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중간 유통업자에게만 혜택을 주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생산농가에 대한 所得稅額 감면은 현재 國內産馬를 생산하는 농가의 대부분이 零細 畜産農家이며 사실상 소득세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는 이는 별로 실효성있는 제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생산에 필요한 제반경비의 소득공제 확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國內産馬 생산농가가 근대적인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상 機資材에 대한 特別償却이나 稅額控除도 실효성측면에서는 한계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同 制度는 企業形 牧場이나 韓國馬事會에 적용한다면 매우

유효한 세제지원이 될 것이다.

만일 지원의 범위를 세제지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자금지원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으로 가정한다면 지원은 생산농가에 대한 축산자금의 지원, 共同購販賣센터의 건립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競走馬 생산 축산농가를 위한 기금의 설치는 사실상 이 부문에 대한 지원제도가 별로 없는 미국, 브라질 등의 競馬先進國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韓國馬事會法의 제 42조에는 매년 이익금이 생길 경우 이월손실금의 보전, 일정 수준의 이익준비금의 설정,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 등을 행하고 연후에 特別積立金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 특별적립금의 80%는 바로 축산진흥기금에 적립되도록 되어 1991년 이후 1994년까지 167억, 180억, 212억, 192억원이 적립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畜産振興基金의 지출이 바로 경주마 생산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축산진흥기금은 競走馬 생산농가만이 아닌 일반적인 축산농가의 지원과 그외의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규모의 적립금을 '國內產馬 生産振興基金'(가칭)이라고 할 수 있는 별도기금을 설립하여 競走馬 생산농가에 직접 자금지원토록 한다면 매우 강력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하나의 代案은 優勝賞金의 일정부분을 적립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마련된 재원은 오로지 國內產馬 생산농가의 種府, 生産, 養育, 管理에 필요한 제반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동안 각종 기금들에 의한 장기저리융자가 미친 부정적인 폐해를 감안할 때 동 기금은 가능한한 저리융자의 방식을 피하고 자금의 가용성을 넓혀 주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V. 競馬産業의 振興과 長期的인 稅源確保戰略

競馬關聯 租稅體系를 사행행위에 대한 懲罰的 課稅나 無痛稅(painless tax)에서 건전한 대중오락 課稅와 競馬産業과 競走馬生産 産業 육성이라는 産業政策的인 고려가 내포된 租稅體系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租稅負擔과 課稅對象의 저변확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료된다.

먼저 課標의 重複으로 인한 복잡한 課稅體系는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馬券稅에 이미 消費課稅와 所得稅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는 바 필요하다면 馬券稅의 稅率을 조정하더라도 여기에 부가하여 目的稅 아닌 目的稅를 賦課하는 것은 稅制와 稅政의 單純·明瞭性 원칙에 위배된다. 其他所得稅도 이미 馬券稅에 所得稅가 융합되어 있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馬券稅의 稅率을 조정해서라도 其他所得稅는 장기적으로 賦課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競馬關聯 租稅體系의 國稅와 地方稅, 地方稅 중에서도 廣域 自治團體와 基礎 自治團體의 稅源配分에 있어 현재와 같은 체제라면 이를 國稅化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競馬關聯 産業의 육성과 발전을 감안하면 현체제에서 한단계 발전시킨 (場外發賣所의 稅源은 당해 場外發賣所 소재 自治團體에 配分) 廣域 自治團體의 稅源으로 존치시키는 것도 무방하리라는 판단이다.

韓國馬事會 收得金の 수준이 주요 外國과 비교하여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해서 競馬運營이 效率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競馬施行에 있어 獨占的인 지위와 個人馬主들에 대한 進入障壁, 調教師와 騎手, 管理士와 馬事會나 馬主와의 관계, 그리고 競走馬의 質的인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마고객은 적정한 상품관리를 통한 質 좋은 競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엄격한 품질관리와 適正한 水準의 還給 및 賞金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최근 수년간의 폭발적인 매출액 증가추세는 체계정비에 대한

수요를 크게 감소시키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본격적인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를 통한 경마산업에 대한 인식제고가 경마산업발전에 필요하다.

競馬産業이 단순한 도박이 아닌 건전한 대중오락 및 스포츠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競馬關聯 稅負擔이 적정한 수준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高率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마산업에 대한 인식이 射倖性에 지나치게 비중이 두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경마산업이 건전하게 육성·발전되기 위해서도 징벌적인 조세체계는 정비될 필요가 있다. 둘째, 韓國馬事會의 收得金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여 賞金水準과 還給率의 수준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경마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고객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이익금의 적립을 통한 시설투자와 함께 “薄利多賣의 原則”에 입각하여 마사회 수득금 수준을 인하하여 환급률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상금수준의 제고를 통한 競馬의 品質管理(quality control)가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경마가 산업으로 정착하고 건전한 오락으로 저변확대가 가능하려면 경주마의 국내생산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한 生産者賞金과 基金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미미하게 주어지고 있는 生産者賞金の 확대와 畜産振興基金의 일부를 『國內産馬生産振興基金』으로 독립·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參考文獻

內務部, 『地方稅政年鑑』, 1995.

朴釘洙·李基榮, 『地方化時代의 財政·金融政策方向』, 韓國租稅研究院, 1995.

裴竣皓·金建洙, 「馬券稅의 特性과 稅負擔分布」, 1996年度 韓國租稅學會 發表論文, 1996.

韓國企業研究院, 『馬券稅制의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1988.

——, 『競馬還給金 其他所得稅制 改善方案』, 1992.

韓國馬事會, 1994年度 決算書, 1995.

——, 『競馬顧客의 利用性向 調查報告書』, 1995. 7.

——, 『競馬施行法規』, 1995. 11.

——, 『個人馬主制 轉換에 따른 稅制實務案內』, 1993. 7

——, 『로얄홍콩자키클럽』, 1994. 4.

——, 『馬事年鑑』, 各연도.

——, 『美國 켄터키州 競馬法規』, 1994. 12.

——, 『世界 主要 8開國 競馬現況』, 1994. 4.

——, 『韓國馬事會 半世紀史』, 1993.

——, 『韓國競馬 60年史』, 1984.

日本中央競馬會, 『나가야마 競馬顧客 動向調查』(韓國馬事會 譯), 1991.

——, 『外國 競馬制度 調查報告書』(韓國馬事會 譯), 1975.

——, 『中央競馬便覽』, 1995.

Calmus, T.W., “Measuring the Regressivity of Gambling Taxes”,

National Tax Journal, Vol. 34, No. 2, 1981, pp. 267~270.

Cooke, A., *The Economics of Leisure and Sport*,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94.

- Rosen, H., *Public Finance*, 3rd ed., Richard D. Irwin. Inc., 1992.
- Stiglitz, J., *Economics of the Public Sector*, W.W.Norton & Company, 1986.
- Suits, D. B.,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7, 1977a, pp. 747~752.
- , "Gambling Taxes: Regressivity and Revenue Potential",
National Tax Journal, Vol. 30, No. 1, 1977b, pp. 19~35.
- Torkildsen, G., *Leisure and Recreation Management*, 3rd. ed., London: E. & F.N.Spon, 1992.